



2021년 4월 2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19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20.(화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
담당과장	오승철 과장(044-203-5360)	담당자	송상현 사무관(044-203-5362)
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%에서 25%로 대폭 확대! - 「신·재생에너지법」 개정법률안 공포 -

- 공급의무자의 신·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‘10% 이내’에서 ‘25% 이내’로 상향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4.20(화) 공포되었다.

* 개정조문 : 신·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) 제2항

* (현행) 총전력생산량의 10% 이내 → (개정)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

- 금년 3.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.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- 이번 개정은 ‘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(10%)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,

-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.

- 또한,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,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산업부는 향후, 9차 전력수급계획(‘20.12) 및 5차 신·재생에너지 기본 계획(‘20.12)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,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(☎ 044-203-5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의5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(이하 “의무공급량”이라 한다)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·보급이 필요한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12조의5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5퍼센트 이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